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특별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을 명확화하고, 특별승진후보자의 공무상 사망 여부 및 특별한 공적 유무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제1항 등, 제35조의5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9. ~ 5.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속”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5조의5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⑨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승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속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소속장관은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공적심사위원회) ① 특별승진후보자의 재직중 특별한 공적 및 공무상 사망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장관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장관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
가.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공무원(같은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고위공무원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인사, 노무 및 소속장관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장관이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제5호, 제8항,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승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승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 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 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 다.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 정하는 공무원	5. ----- ----- 「공무원 재해보상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 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 무원으로서 소속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제35조의5에 따 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야 한다.
<신 설>	⑨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한 공적 이 있어 특별승진임용의 긴급한

<신 설>

<신 설>

필요가 있다고 소속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소속장관은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제35조의5(공적심사위원회) ① 특별승진후보자의 재직중 특별한 공적 및 공무상 사망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장관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장관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

가.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공무원(같은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고위공무원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인사, 노무 및 소속장관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장관이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5